

#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번호  | 제513호                   |
| 의결년월일 | 2006. 6. 16.<br>(제127회) |

제안년월일 : 2006년 6월 7일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 □ 제안이유

- 「공직선거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2006. 1. 12)으로 부천시의회의원 정수가 34명에서 30명으로 감축 조정됨에 따라 현행 상임위원회 위원수를 의원정수에 맞게 효율적으로 조정 반영하고,
- 「지방자치법」의 개정(2006. 4. 28, 법률 제7935호)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또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일부 법규 미비점을 보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 주요골자

- 가.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수를 감축 조정된 의원정수(30인)에 맞게 조정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종합심사하게 함으로써 예산 및 결산과 함께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함(안 제7조제2항)

다. 현행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대신하여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신뢰와 책임의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함(안 제7조제3항)

##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2조제2호중 “11인이내”를 “9인 이내”로 하고, 동조제3호중 “11인이내”를 “10인 이내”로 하며, 동조제4호중 “12인이내”를 “11인 이내”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으며, 의회운영위원장을 제외한 각 상임위원장은 의회운영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7조제2항중 “결산”을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생략)</p> <p>1. (생략)</p> <p>2. 기획재정위원회 <u>11인이내</u></p> <p>3. 행정복지위원회 <u>11인이내</u></p> <p>4. 건설교통위원회 <u>12인이내</u></p>               | <p>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u>9인 이내</u></p> <p>3. ----- <u>10인 이내</u></p> <p>4. ----- <u>11인 이내</u></p>       |
| <p>제4조(상임위원회 위원) ①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u>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 행정복지, 건설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u></p> <p>② · ③ (생략)</p> | <p>제4조(상임위원회 위원) ①-----<br/>-----<br/>----- <u>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으며, 의회운영위원장을 제외한 각 상임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u></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
| <p>제7조(특별위원회) ① (생략)</p> <p>②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p> <p>③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둔다.</p>                        | <p>제7조(특별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u>결산, 기금 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u>-----<br/>-----</p> <p>③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p> |
| <p>④ · ⑤ (생략)</p>   | <p>④ · ⑤ (현행과 같음)</p>   |